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연장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일

경 상 남



1.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집합제한

1)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집합 금지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 제한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불법·유사방문판매행위* 포함)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6종)	집합 제한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PC방 ▲ 오락실·멀티방 ▲ 실내체육시설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 학원(교습소 포함) ▲ 독서실·스터디카페 ▲ 직업훈련기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이·미용업 ▲ 백화점·대형마트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300㎡ 이상)
기타 시설	집합 금지	▲ 파티룸 ▲ 홀덤펍
	집합 제한	▲(경남)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의 경우 경상남도 고시 제2020-543호 효력을 유지함

** 시장·군수는 도와 협의 하에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기존에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 명령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는 효력이 유지되고, 기간종료 후에는 이 명령으로 대체함

2)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항 * 시설별 방역수칙 참고

4) 시설별 방역수칙(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p>▶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p> <p>*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p> <p>-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p>
기타 모임·행사	<p>▶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p> <p>*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p> <p>▶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p>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p>▶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p> <p>▶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p> <p>▶ 노래·음식 제공 금지</p>
노래연습장	<p>▶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강화)</p> <p>▶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p> <p>▶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p>
실내 스탠딩 공연장	<p>▶ 21시 이후 21시 이후 ~ 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p> <p>▶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p>
식당	<p>▶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p> <p>▶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p> <p>▶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사·수저 등 사용 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p> <p>▶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p> <p>*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p>
카페 (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편	▶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수용인원의 1/3로 인원제한 ▶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칸막이 설치시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예, 앞은 시선 높음)면서 폭이 테이블 폭 이상일 것/ 테이블, 마우스 등 소독 후 재사용 수칙 추가(강화)
독서실·스터디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경남)체험방형태 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 의료기기 대수 당 1/2 이용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를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2.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

3. 처분기간 : 2021. 1. 4.(월) 0시 ~ 2021. 1. 17.(일) 24시, 2주간

4. 처분사유 :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월) 0시부터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 1) 핵심 방역수칙 준수 위반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 2의3, 2의4,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와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될 수 있습니다.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시설명	담당부서(도)	연락처	비 고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 단란주점 ▶ 헌팅포차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식품의약과	211-5024	
▶ 콜라텍	예방안전과	211-5414	
▶ 노래연습장 ▶ PC방 ▶ 오락실·멀티방 ▶ 영화관	문화예술과	211-4534	
▶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과	211-3354	
▶ 공연장	문화예술과	211-4544	
▶ 놀이공원, 워터파크	관광진흥과	211-4617	
▶ 실내체육시설,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체육지원과	211-4744	
▶ 결혼식장	가족지원과	211-5256	
▶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211-4873	
▶ 목욕업 ▶ 이·미용업	식품의약과	211-5013	
▶ 학원 ▶ 독서실	통합교육추진단	211-3665	
▶ 마트·백화점 ▶ 백화점·대형마트	소상공인정책과	211-3434	
▶ 무인카페	식품의약과	211-5033	
▶ 직업훈련기관	각 소관부서	-	
▶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211-4514	
▶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과	211-4874	
▶ 요양병원	식품의약과	211-5045	
▶ 정신병원	보건행정과	211-4933	
▶ 콜센터	노동정책과	211-3464	
▶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민박 등(관광진흥법상)	관광진흥과	211-4617	
▶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민박 등(공중위생법상)	식품의약과	211-5017	
▶ 어촌체험마을(민박)	해양수산과	211-3944	
▶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업정책과	211-6226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생활방역추진단	211-0944	

끝.